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1211호(號) 1931년(昭和 6) 1월 21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9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중(中) 1931(昭和 6)년 1월 2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1월 2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 내(內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철광(鐵鑛)의 항(項)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품목(品目)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급종별(扱種別)	임률(賃率)	기사(記事)
얼음[氷]	노량진(露梁津), 용산(龍山), 평양(平壤), 백마(白馬), 단동(安東), 선교리(船橋里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, 서빙고(西氷庫), 철원(鐵原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차 급(車扱)	251km(斤) 이상(以上) 2할(割) 감(減)	본(本) 임률(賃率)은 1931(昭和 6)년 3월 31일까지에 한(限)하여 적용(適用)함
	동(同)	대구(大邱), 마산(馬山) 진해(鎭海), 군산(群山)	동(同)	2할(割) 5푼(分) 감(減)	